

# 집합투자기구 수시공시

『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』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(1)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에 의한 공시 [소규모펀드(1년)여부 공시 대상]

해당사항 없음

(2)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5호에 의한 공시 [소규모펀드(1개월)여부 공시 대상]

협회표준코드	펀드명	발생일자	발생일 설정잔액	발생일 순자산총액	기준가격	비고
KR5219515131	신한 BNPP 핵심공략 증권 투자신탁[주식](종류 A1)	20120630	1,783,668,351	1,739,551,999	975.27	
KR5219515149	신한 BNPP 핵심공략 증권 투자신탁[주식](종류 A2)	20120630	2,947,718,093	2,876,291,908	975.77	
KR5219786732	신한 BNPP 더드림코브릭스증권자투자신탁제 1 호[주식](종류 A)	20120630	11,284,115,674	8,532,443,555	756.15	주 1)
KR5219786740	신한 BNPP 더드림코브릭스증권자투자신탁제 1 호[주식](종류 C-e)	20120630	449,230,551	332,030,834	739.11	
KR5219826835	신한 BNPP 엄마사랑어린이머징스타증권자투자신탁제 1 호[주식](종류 A)	20120630	2,425,685,465	1,563,332,718	644.49	
KR5219826843	신한 BNPP 엄마사랑어린이머징스타증권자투자신탁제 1 호[주식](종류 C)	20120630	683,320,249	423,816,575	620.23	
KR5219826850	신한 BNPP 엄마사랑어린이머징스타증권자투자신탁제 1 호[주식](종류 C-e)	20120630	479,251,226	304,410,946	635.18	
KR5219842030	신한 BNPP 해피라이프연금브릭스증권자투자신탁제 1 호[주식]	20120630	5,022,540,593	3,325,653,930	662.15	주 1)
KR5210652511	신한 BNPP 직장인플랜증권자투자신탁[주식-재간접형](종류 C1)	20120630	1,309,600,480	1,186,530,614	906.02	
KR5219473174	신한 BNPP Tops Easy Trading 시스템 증권 투자신탁 제 1 호[주식혼합]종류 C1	20120701	56,645,310	55,275,844	975.82	
KR5210974873	신한 BNPP Tops Easy Trading 시스템 증권 투자신탁 제 1 호[주식혼합]종류 C2	20120701	82,841,862	80,963,345	977.32	
KR5210974881	신한 BNPP Tops Easy Trading 시스템 증권 투자신탁 제 1 호[주식혼합]종류 C3	20120701	512,103,799	501,308,040	978.92	
KR5210974899	신한 BNPP Tops Easy Trading 시스템 증권 투자신탁 제 1 호[주식혼합]종류 C4	20120701	362,513,791	355,399,682	980.38	
KR5210974907	신한 BNPP Tops Easy Trading 시스템 증권 투자신탁 제 1 호[주식혼합]종류 C5	20120701	2,504,583,181	2,459,580,449	982.03	
KR5210969337	신한 BNPP 달마다 행복 증권 자투자신탁 제 1 호[주식혼합-파생형] 종류 A3	20120701	1,211,778,462	1,186,400,072	979.06	
KR5210969345	신한 BNPP 달마다 행복 증권 자투자신탁 제 1 호[주식혼합-파생형] 종류 C1	20120701	2,558,469,978	2,487,193,526	972.14	
KR5210969378	신한 BNPP 달마다 행복 증권 자투자신탁 제 1 호[주식혼합-파생형] 종류 C-e	20120701	32,083,188	31,299,176	975.56	

주1) 해당 자펀드(종류형 포함)는 소규모펀드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, 소규모 모펀드에 투자하고 있는 자펀드에 해당되므로 모펀드가 언제든지 임의해지 될 수 있으므로 공시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.

(3)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[처리방안결정사실(방법)공시대상]

해당사항 없음

\* 위 대상 집합투자기구는 법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라며(처리방안결정사실(방법)공시 제외),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사 또는 해당 판매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